

Global Business Report 08-063

중-홍콩 CEPA 5주년 평가와 한-중 FTA에의 시사점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CONTENTS

목 차

요 약 / 1

I. 중-홍콩 CEPA 개황 / 3

- 가 | CEPA 의의와 배경
- 나 | CEPA 구성과 경과

II. 중-홍콩 CEPA 서비스 분야 주요 내용 / 9

- 가 | 적용 범위
- 나 | 자격 요건 : 서비스 제공자의 정의
- 다 | CEPA와 WTO 양허안 비교
- 라 | 2009년 1월부 주요 신규 조치

III. 홍콩에 미치는 영향 / 29

- 가 | 경제적 효과
- 나 | 홍콩 서비스업의 중국진출 특성
- 다 | CEPA의 문제점

IV. 한-중 FTA에의 시사점 / 33

요 약

중국과 홍콩의 자유무역협정인 ‘CEPA(경제협력강화협정)’가 발효된 지 만 5년이 지났다. CEPA는 WTO(세계무역기구)의 룰에 따라 제정됐지만 WTO 양허안보다 한층 높은 수준의 개방조치를 담았고 중국이 체결한 대외경제협력협정 가운데 개방의 폭과 범위가 가장 넓다.

기본합의서와 6개 부속서, 다섯 차례의 보충협의를 거쳐 중국은 1,515개 홍콩산 제품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40개의 서비스업을 홍콩기업들에게 개방했다. 다수의 무역투자 간소화 조치도 뒤따랐다.

최근 중국 내 제조업 투자환경 악화로 대중국 서비스업 진출을 확대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중국의 대홍콩 CEPA 서비스업 개방으로 인한 홍콩의 경제적 효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CEPA 체결에도 불구하고 홍콩 서비스업 기업의 중국진출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들을 찾아내 향후 대중국 FTA 본격 협상 시 중국 측에 대해 강력하게 개선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CEPA 체결 5주년이 지났음에도 중국의 서비스업 개방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고 복잡한 국내 수속절차로 인해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홍콩기업이 많다. 또한 중국이 대외개방은 했지만 국내법 및 제도와외 충돌 현상이 자주 벌어지고 전반적인 서비스업 경영여건도 미비해 홍콩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중국의 서비스업 개방 수준과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시장장벽인 이른바 ‘잠규칙(潛規則)’에 대한 조사 및 대응이 필수적이다. 중국 측의 시장개방 확대만을 요구하기 보다는 한-중 간 서비스업의 발전수준 격차와 시장 환경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중 FTA를 일시에 전면 시행하기 보다는 한국과 중국의 특정지역에 ‘한-중 서비스업 협력 시험지구’를 설치하는 등 단계적 추진전략도 검토해보아야 한다.

1. 중-홍콩 CEPA 개황

가. 의의와 배경

□ 의의 : 세계 유일의 '1국 2체제'형 자유무역협정

- 중-홍콩 CEPA는 중국과 홍콩이 2003년 6월 29일 기본 합의서(main text) 및 6개 부속서(annexes)에 서명한 경제협력강화협정(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임
 - 이는 중-홍콩 쌍방 간 최초로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이며 국제자유무역도시인 홍콩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자유무역협정이기도 함 ¹⁾
 - 2008년 7월 31일까지 5차에 걸쳐 보충협정(supplements)가 체결됨
- 중-홍콩 CEPA는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이며 지금까지 중국이 체결한 대외경제협력 협정 가운데 개방의 폭이 가장 넓음
 - WTO 룰에 따라 제정됐지만 중국의 WTO 양허안보다 개방 범위가 넓음
 -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1국 2체제' 지역에 적용된 자유무역협정임

1) 중-홍콩 CEPA는 형식과 내용면에서 실질적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이지만 '1국 1체제'라는 중국과 홍콩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반적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는 FTA와는 다른 용어를 사용함

□ 배경 1 : 세계적인 지역경제 일체화 추세에 대응

- 세계적인 개방화 및 지역경제 일체화 추세로 인해 중국과 홍콩 간 경제협력 구조가 전에 없던 도전에 직면하면서 양측 관계를 한 단계 제고시킬 필요성이 확대됨

□ 배경 2 : 공식적인 협력 '툴'의 필요성

- 중국과 홍콩은 '1국 2체제' 하에서 발생하는 각종 제도적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공식적인 협력의 툴(tool)이 필요했음
- 홍콩은 중국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최대의 외자 유입처이자 대외투자 대상지임
- 중국은 홍콩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무한한 발전 공간을 제공해온 배후 산업기지로써 홍콩의 경제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해왔음

□ 배경 3 : 홍콩의 역할과 기능이 필요한 중국

- 중국은 개혁개방의 심화에 따라 국내시장과 국제시장을 동시에 활용해야할 필요성이 커졌고 이 과정에서 홍콩의 역할과 기능이 지속 부각됨
- 중국은 홍콩과의 공식적인 자유무역관계를 통해 대홍콩 무역투자 관계 발전은 물론 홍콩을 경유한 국제협력 공간도 확대할 수 있음
- 중국의 취약한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홍콩 서비스업의 중국진출 확대가 필요했음

□ 배경 : 4 중국과의 연계 강화가 절실한 홍콩

- 홍콩은 1997년 이후 아시아 금융위기와 일련의 대외적 충격으로 투자와 소비가 급감하는 등 구조적인 취약성이 드러남
- 홍콩의 비교우위와 중국의 자원·시장 간 연계 필요성이 커졌음

나. 구성과 경과

□ 중-홍콩 CEPA의 구성

○ 상품무역

- 중-홍콩 CEPA는 2004년 1월 1일부터 중국으로 수출되는 일부 홍콩산 제품 2)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2006년 1월 1일부터는 이를 모든 홍콩산 제품으로 확대함

* 영세율 적용을 받는 홍콩산 제품이란 CEPA 원산지규정(Roots) 리스트에 포함된 제품을 의미하며 2008년 11월 28일 현재 1,515개 홍콩산 제품이 실질적으로 영세율 혜택을 받고 있음 3)

- 중국과 홍콩은 상호 수입쿼터, 수입허가증관리 등의 비관세장벽과 관세쿼터를 취소하며 반덤핑과 반보조금 조치도 취하지 않음

[표1] 중-홍콩 CEPA의 3대 구성

구 성	내 용
상품무역	CEPA 원산지규정에 부합하는 홍콩산 제품에 대해 영세율 혜택
서비스무역	홍콩 서비스제공자에게 중국 서비스시장을 WTO 양허안보다 조기에, 폭넓게 개방
무역투자 간소화	다수의 무역, 투자촉진을 위한 협력강화로 비즈니스 환경 개선

○ 서비스무역

- 중국은 순차적으로 홍콩 서비스 제공자에게 총 29개 분야에 걸쳐 납입자본금 인하, 투자지역 및 지분제한 완화 등의 조치를 시행함

2) 홍콩산 제품이란 상품 제조공정이 홍콩에서 이루어진 경우 또는 홍콩에서 제품의 부가가치를 30% 이상 증가시킨 경우를 의미

3) CEPA 원산지는 홍콩상무국 또는 정부인증기관(홍콩총상회, 홍콩중국제조업협회 등)에서 발급하며 CEPA 원산지 신청서는 FA(Factory Registration)를 보유한 기업만이 신청할 수 있음

* 이 가운데 홍콩이 비교우위를 가지며 중국의 개방조건이 성숙된 전시컨벤션, 물류업은 전면 개방함

- 특히 개체공상호(개인사업자) 분야의 개방 확대로 홍콩기업은 물론 홍콩인 개인의 중국 내 서비스업 창업에도 유리한 조건을 제공함

○ 무역투자 간소화

- 무역투자 촉진, 통관 간소화, 상품검역, 식품안전, 법률법규 투명성, 지적권 보호, 금융 및 관광협력, 전문인 자격 상호인증 등에 걸쳐 협력 강화

□ 중-홍콩 CEPA의 경과

○ 중-홍콩 CEPA는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때부터 제기됨

- 2001년 12월 당시 둥지안화(董建華) 홍콩 행정장관의 공식제안 이 후 2002년 1월 25일 북경에서 협정을 위한 세부 협의 시작

○ 이후 2003년 6월 29일 1차 협정이 체결되어 2004년 1월 1일부터 중국은 374개 홍콩산 수입제품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함[CEPA I]

- 기본합의서와 6개 부속서로 된 CEPA I 체결로 CEPA 원산지규정에 부합한 273개 홍콩산 제품이 우선적으로 영세율 혜택을 받음
- 서비스무역 분야에서는 경영컨설팅, 전시컨벤션, 광고, 회계, 건축, 부동산 및 관련 전문 서비스 등 총 18개 분야를 중국의 WTO 가입 양허안보다 조기에 홍콩 서비스 제공자에게 개방함
- 통관, 검역 등 7개 분야의 무역투자 간소화 조치도 병행됨

○ 1차 보충협약(2004.8.27 체결)은 2005년 1월 1일부 발효[CEPA II]

- 중국은 총 713개 홍콩산 수입제품에 대해 추가로 영세율을 적용했으며 CEPA I 과 CEPA II의 ROOs에 따라 실질적으로 영세율 혜택을 받는 홍콩산 제품이 1,108개로 증가

- 서비스무역에서는 공항서비스, 문화오락, 정보기술, 직업소개소, 인력중개소, 특허대리, 상표대리, 전문기술인력자격고시 등 8개 분야를 홍콩 서비스 제공자에게 추가 개방함

○ 보충협약Ⅱ(2005.10.18 체결)는 2006년 1월 1일부 발효[CEPAⅢ]

- 상품무역에서 모든 홍콩산 수입제품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했으며 ROOs에 따라 1,369개 홍콩상품이 실질적으로 영세율 혜택을 받음
- 서비스무역에서는 법률, 회계, 시청각, 건축, 유통, 은행, 자동차 및 오토바이 유지보수 등 10개 분야 23개 개방조치가 포함됨
- 무역투자 간소화는 중국 증권사 및 선물회사의 홍콩 내 기구설립을 허용하기 시작함

○ 보충협약Ⅲ(2006.6.27 체결)은 2007년 1월 1일부 발효[CEPAⅣ]

- 상품무역에서 ROOs 대상 품목이 1,407개로 확대됨
- 서비스무역에서는 법률, 전시컨벤션 등 이미 개방한 10개 분야 15개 추가개방 조치가 시행됨
- 무역투자 간소화 분야에서는 지재권 보호 협력 강화가 추가됨

○ 보충협약Ⅳ(2007.6.29 체결)는 2008년 1월 1일부 발효[CEPAⅤ]

- 상품무역에서 ROOs 대상 품목이 1,465개로 확대됨
- 서비스무역에서는 28개 분야 40개 개방조치가 추가돼 중국은 총 38개 서비스분야를 홍콩에 개방하게 됨
- 무역투자 간소화 분야에서는 금융 등 분야의 협력강화가 추가됨

[표2] 중-홍콩 CEPA 경과

문 건	체 결	발 효	요 지
CEPA I (기본합의서, 6개 부속서)	2003.6.29 (기본합의서) 2003.9.29 (부속서)	2004.1.1	-상품무역 : 374개 홍콩산 수입제품 영세 율 적용 *273 ROOs 4) -서비스무역 : 홍콩 서비스 제공자에게 18개 분야 조기 개방 5) -무역투자 간소화 : 통관, 검역 등 7개 분야 협력강화 6)
CEPA II (보충협약)	2004.8.27	2005.1.1	-상품무역 : 홍콩산 713개 수입품목 추가 영세율 적용 *1,108 ROOs -서비스무역 : 홍콩 서비스 제공자에게 8 개 분야 추가 개방 7)
CEPA III (보충협약 II)	2005.10.18	2006.1.1	-상품무역 : 홍콩산 전 수입품목 영세율 적용 *1,369 ROOs -서비스무역: 10개 분야 23개 개방조치8) -무역투자 간소화 : 중국 증권사 및 선물 회사의 홍콩 내 기구설립 허용
CEPA IV (보충협약 III)	2006.6.27	2007.1.1	-상품무역 : 1,407 ROOs -서비스무역 : 법률, 전시컨벤션 등 이미 개방한 10개 분야 15개 추가 개방 -무역투자 간소화 : 지적권보호 추가
CEPA V (보충협약 IV)	2007.6.29	2008.1.1	-상품무역 : 1,465 ROOs -서비스무역 : 28개 분야 40개 개방조치 추가 *총38개 서비스분야 개방 9) -무역투자 간소화 : 금융 등 협력강화
CEPA VI (보충협약 V)	2008.7.29	2009.1.1	-상품무역 : 1,510 ROOs -서비스무역 : 개방조치 누계 200개 초과

4) ROOs(Rules of Origin; 원산지규정)

5) 18개 조기개방 분야는 경영컨설팅, 전시컨벤션, 광고, 회계, 건축부동산 및 관련 전문 서비스, 의료 및 치과, 유통, 물류, 화물대리, 창고, 운송, 여행, 시청각, 법률, 은행, 증권, 보험, 부가통신 등.

6) 7개 협력강화 분야는 무역투자촉진, 통관간소화, 상품검험검역·식품안전·품질표준, 전자상거래, 법률법규 투명성, 중소기업협력, 중의약산업협력 등.

7) 추가 8개 분야는 공항서비스, 문화오락, 정보기술, 직업소개소, 인력중개소, 특허대리, 상표대리, 전문기술인력 자격고시 등.

8) 10개 분야는 법률, 회계, 시청각, 건축, 유통, 은행, 증권, 여행, 운송, 개체공상호(자영업; 화물 및 기술 수출입, 촬영, 확대, 인쇄, 세탁염색, 자동차 및 오토바이 유지보수 등.

9) 총 38개 분야는 회계, 화물대리, 광고, 정보기술, 전문인력자격고시, 공항서비스, 개체공상호, 시청각, 보험, 증권, 은행, 직업소개소, 인력중개소, 법률, 창고, 건축부동산 및 관련 전문 서비스, 물류, 부가통신, 전시컨벤션, 경영컨설팅, 여행, 문화오락, 상표대리, 유통, 의료 및 치과, 운송, 특허대리 등 17개 기개방 분야와 인쇄, 공공사업, 경영컨설팅 관련 서비스 및 건설을 제외한 프로젝트 경영서비스, 건축물청소, 체육서비스, 컴퓨터 및 관

- 보충협약 V (2008.7.29 체결)는 2009년 1월 1일부 발효[CEPA V]
- 상품무역에서 ROOs 대상 품목이 1,510개로 확대됨 10)
- 서비스무역에서는 17개 영역의 29개 개방조치가 추가돼 2004년 CEPA 발효 이후 서비스분야 개방조치가 총 200개를 넘어섬

2. 중-홍콩 CEPA 서비스 분야 주요 내용

가. 적용 범위

- 중-홍콩 CEPA 서비스무역 분야 협정에 따라 중국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08년 7월 29일까지 총 40개 서비스업을 홍콩 서비스 제 공자에게 개방함
- 서비스무역 개방은 기본적으로 WTO 룰에 기초하고 있으나 중-홍콩 CEPA는 중국의 서비스업 양허안 일정보다 '조기 개방-확대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표3] '중-홍콩 CEPA 서비스무역 개방범위'에 포함된 업종 가운데 #표시는 2009년 1월 1일부 발효되는 CEPAVI으로 신규 개방된 영역이며 *는 추가 개방, 기타(無표시)는 CEPA1~CEPA V까지 연차적으로 개방된 업종임
- 서비스무역 개방 범위는 향후 양측 협상결과에 따라 신규 개방 또는 기개방 업종의 범위확대 등의 형식으로 추가될 수 있음

나. 자격 요건 : 서비스 제공자(HKSS; Hong Kong Service Supplier)

☐ 자연인

-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본토) 공민을 지칭하며 홍콩의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영주권자를 의미함

☐ 법인

- 법인으로서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크게 영업경험, 홍콩인 직원 비중, 성격 등의 측면에서 조건에 부합해야 함

런 서비스, 시장조사, 양로, 통번역, 환경, 촬영서비스 등 11개 신규 개방 분야를 포함.

10) 2008년 7월 29일 보충협약 V 체결 당시에는 ROOs 대상 품목이 1,510개였으나 11월 28일 현재 1,515개로 증가

[표3] 중-홍콩 CEPA 서비스무역 개방 범위

회계(CPC862) *	화물대리(CPC748, 749)	인쇄서비스*
광고(CPC871)	정보기술서비스	전문인력자격고시
항공운수서비스 * (CPC74610, 74690)	개체공상호<자영업> *	공공사업서비스
시청각(CPC83202 등)	보험	증권
은행 *	직업중개 *	경영컨설팅 및 프로젝트 경영관련 서비스 (CPC8660, 86601)
건축물청소(CPC874)	인력중개(CPC872) *	체육서비스 (CPC96411-96413)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CPC842, 843)	법률(CPC861)	창고(CPC742)
건설, 부동산 및 관련 전 문서비스(CPC511-518, 8671-8674,821,82201, 82202) *	물류	부가통신서비스
전시컨벤션(CPC87909) *	경영컨설팅 (CPC86501-86506, 86509)	여행(CPC641-643, 7471)*
문화오락	시장조사(CPC86401)	상표대리
유통(CPC621, 622, 61, 63, 8929) *	의료 및 치과(CPC9312) *	운송(CPC7211,7212, 7121-7123,748,749, 71213, 8868) *
양로.장애인사회서비스 (CPC93311, 93323) *	특허대리	통번역서비스 (CPC87905)
환경서비스(CPC9401, 9402, 9403, 9404, 9405, 9406, 9409) *	촬영서비스(CPC875)	과학기술.컨설팅서비스 #
채광 #		

주 : CPC는 상품의 HS 코드에 해당하는 서비스업 분류 코드(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이며 CPC 미기재 업종은 GNS/W/120 미분류 (개체공상호) 또는 CEPA 관련 문
건 상 미기재된 경우임

자료원 : 홍콩무역발전국

- 서비스 전반에 걸쳐 홍콩 기업등기소에 정식 등록된 기업(사무소 제외)으로써 홍콩 내 3년 이상 영업 경험을 보유하고 전체 직원 중 홍콩인의 비중이 50%를 상회해야 함
- 건설엔지니어링과 은행업, 보험업 등의 경우 홍콩 내 영업경험 기간이 5년 이상 요구됨

[표4] 중-홍콩 CEPA 서비스 제공자의 정의

자 연 인	구분	정의		
	중국의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국민		
	홍콩의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영주권자		
법 인	분야	영업경험	홍콩직원 비중	성격
	서비스	3년 이상	50% 이상	홍콩내 정식 등록기업 (사무소 등 제외)
	건설엔지니어링	5년 이상	50% 이상	상동
	은행업	5년 이상	50% 이상	홍콩내 정식 등록은행
	보험업	5년 이상	50% 이상	홍콩내 정식 등록기업
	로펌	3년 이상	50% 이상	홍콩내 정식 등록필

주 : 상기 표는 서비스 제공자의 정의 가운데 요점만을 기재했으며 세부 사항은 관련 문건 참고요망

자료원 : CEPA Annex 5 : Definition of "Service Supplier" and Related Requirements 및 기타 중-홍콩 CEPA 관련 문건

□ 세금 및 영업장소

- 홍콩 서비스 제공자 11)는 홍콩에서 실질적인 상업 활동에 종사하고 법정 소득세(profits tax)를 납부해야 하며 영업범위 및 규모에 부합하는 영업장소를 보유해야 함

11) 홍콩무역발전국 자료에 따르면 2008년 7월말 기준 홍콩 서비스 제공자로서 중국진출 혜택을 누린 기업 수는 1,218개 사 임(특히 의료 및 금융 분야의 CEPA 수혜 기업 수는 매우 적은 편임; [표5] 참조)

[표5] 홍콩 서비스업 기업의 서비스 제공자(HKSS) 신청 및 승인 현황

연번	서비스 영역	신청건수(누적)	승인 건수(누적)
1	법률	15	15
2	회계	1	1
3	건설	68	65
4	의료 및 치과	2	2
5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13	13
6	부동산	20	19
7	광고	97	89
8	시장조사	0	0
9	경영컨설팅	37	30
10	공공사업	1	1
11	인력 관리 및 중개	42	39
12	건축물 청소	0	0
13	촬영	0	0
14	인쇄	0	0
15	통번역	0	0
16	전시컨벤션	10	10
17	통신	36	31
18	시청각 서비스	25	24
19	물류	263	257
20	환경	0	0
21	보험	3	3
22	은행 및 금융	9	9
23	증권 및 선물	7	7
24	양로.장애인서비스	0	0
25	관광여행	14	12
26	문화오락(시청각 제외)	2	2
27	체육서비스(골프코스 기공 제외)	0	0
28	운송	534	525
29	항공운수	65	59
30	상표대리	5	5
합 계		1,269	1,218

자료 : 홍콩무역발전국

다. CEPA와 WTO 양허안 비교 ¹²⁾

○ 법률(Legal Services)

- 중국의 WTO 가입 양허안에 따르면 법률 서비스는 국경간 공급(Across-border supply)과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는 시장 접근(Market access),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모두 제한사항이 아니며(no restriction) 자연인 이동(Presence of natural persons)은 수평적 양허(Horizontal commitment) ¹³⁾ 외에는 미양허 대상임
- . 그러나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의 경우 ‘시장접근 관련 제한조치’에서는 외국 로펌의 대표사무소 형식의 영리활동은 허용(대표사무소의 지역 및 수량제한은 이미 폐지)하나 중국 로펌과의 합병(合營)을 금지하며 ‘내국민대우 관련 제한 조치’에서는 외국 로펌 중국대표사무소 대표의 중국 체류기간을 연간 6개월 이상 요구하고 중국 국가등록 변호사의 고용을 금지하고 있음
- 이에 반해 중-홍콩 CEPA에서는 4개항의 전제를 달기는 했으나 홍콩 로펌과 중국 로펌의 합병을 허용하고 있음
- . 또한 WTO 양허안에 따라 (홍콩을 제외한 기타) 외국 로펌이 중국이 설치한 대표사무소의 대표에 대해 중국 내 체류기간 연간 6개월 이상을 요구했으나 홍콩 로펌의 중국대표사무소 대표에 대해서는 이 같은 체류기간 요구를 폐지함
- WTO 양허안에서는 외국 변호사의 중국법률업무를 미양허하고 있고 있으나 홍콩에 대해서는 중-홍콩 CEPA에 따라 개방함
- . 이에 따르면 중국 변호사자격취득을 취득한 홍콩인은 중국에서 인턴 및 비소송 법률업무를 진행할 수 있음
- . 중국 변호사 자격취득 홍콩인의 혼인 및 상속 안건 대리 업무를 허용하며 홍콩 법정 변호사(barristers)에 대해서는 중국 민사소송 대리도 허용

12) 중-홍콩 CEPA의 실질적 내용 및 개방수준 파악을 위해서는 CEPA와 중국의 WTO 양허안을 서비스 업종별로 비교해보는 것이 효과적임. 여기서는 주로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 관련 양허의 핵심과 요점만을 상호 비교하며 CEPA와 WTO의 개별 세부 양허사항은 香港工業貿易署(www.tid.gov.hk; CEPA), 香港貿易發展局(www.tdctrade.com; CEPA), 中國投資指南(www.fdi.gov.cn; WTO)을 각각 참조.

13) 수평적 양허는 서비스 전 분야에 걸친 양허를 의미.

[표5] 중-홍콩 CEPA와 중국 WTO 양허안 비교 : 법률 서비스

WTO 양허안 조건	CEPA에 따른 홍콩의 중국시장진입 조건
-외국 로펌 : 중국 로펌과의 합영(合營) 불허	-아래 4개조건 부합하는 홍콩 로펌에 대해 중국 로펌과의 합영 허용 : 1.기업 명칭, 영업장소 및 정관 보유; 2.자산총액 10만 위안 이상; 3.파트너 변호사 3명 이상(변호사 자격 및 영업경험 3년 이상에 한해 중국 로펌의 파트너 자격 부여); 4.파트너십 서면 협의서. -중국 로펌은 설립 3년경과 후 홍콩 로펌과의 합영 허용 -홍콩 로펌의 중국대표사무소와 1개 중국 로펌의 합영 허용(지역제한 없음)
-외국 로펌 중국대표사무소 대표의 중국 체류기간 年6개월 이상	-홍콩 로펌의 중국대표사무소 대표에 대한 중국 체류기간 요구 폐지
-외국 변호사의 중국법률업무 종사 금지	-중국 변호사자격취득 홍콩인의 중국 내 인턴.비소송 법률업무 허용, 중국 변호사 신분으로 혼인.상속 안건 대리 허용
-	-홍콩 법정 변호사(barristers)의 중국 민사소송대리 허용
-	-홍콩 영주권 보유 중국 국민의 중국통일사법고시 응시허용 -중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홍콩인에 대해 중국 로펌 실습 1년 후 변호사 영업자격 신청 허용. 실습은 중국 로펌의 홍콩사무소에서 진행 가능.

○ 의료(Medical Services)

[표6] 중-홍콩 CEPA와 중국 WTO 양허안 비교 : 의료 서비스

WTO 양허안 조건	CEPA에 따른 홍콩의 중국시장진입 조건
-외국측 다수지분(70%) 합자병원, 진료소 허용. 합자병원 투자총액 2천만위안 이상, 합자 기한 20년 이하 -중국 측 필요에 따라 수량제한	-2008년 1월부터 중국 내 합자(작) 의료 기관의 투자총액 요구를 2,000만 위안에서 1,000만 위안으로 인하
-합자 병원 또는 진료소가 고용하는 의료진의 대다수는 중국국적 보유 요구	-합자병원, 진료소가 고용하는 의료진의 대부분은 홍콩 영주권자로 구성 가능 -홍콩 내 의료자격 보유자이며 진료경험 5년 이상인 홍콩 영주권자는 중국 의료업 자격취득후 중국내 진료소 개설허용 -중국의사자격증 취득 홍콩서비스제공자의 중국 내 진료소(solo practice clinic) 개설에 대해 중국인과 동일한 대우
-위생부발급 외국인 의사 단기 의료허가증 기한은 최장 6개월(만기 후 1년 연장 가능)	-홍콩 의료자격 보유자의 중국 내 단기 의료허가 최장기한은 3년(기한 만료 후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단기 의료허가를 신청
	-홍콩 의료자격을 보유한 홍콩 영주권자의 중국 자격고시 응시 허용

- WTO 가입 양허안(의료 서비스)은 시장접근 관련 제한조치에서 상업적 주재와 관련, 독자는 허용하지 않고 합자투자만을 허용하며 중국 측의 필요에 따라 합자병원, 진료소의 수량을 제한할 수 있음
- . 자연인의 이동은 수평적 양허 외에는 미양허 대상이며 위생부 발급 의료허가증의 기한 제한 등으로 규제하고 있음(국경간 공급과 해외소비는 제한 없음)

- . 내국민대우 관련 제한 조치는 합자 병원 또는 진료소가 고용하는 의료진의 대다수는 중국 국적이어야 함을 요구
- 중-홍콩 CEPA에서는 홍콩에 대해 “중외 합자합작 의료기구 관리 잠정방법”에 규정된 투자총액 2,000만 위안 이상 조건을 1,000만 위안 이상으로 인하며 위생부 발급 단기 의료허가증의 기한을 ‘최장 6개월-1년 연장’(對WTO 회원국)에서 ‘최장 3년’(對홍콩)으로 완화함
- . 또한 중-홍콩 합자병원 또는 진료소가 고용하는 의료진의 대부분을 홍콩 영주권자로 구성할 수 있으며 중국 의사자격증을 취득한 홍콩 서비스제공자가 중국에 진료소(solo practice clinic) 개설 시 중국인과 동일한 내국민대우를 부여함

○ 전시컨벤션(Convention and Exhibition Services)

[표기] 중-홍콩 CEPA와 중국 WTO 양허안 비교 : 전시컨벤션 서비스

WTO 양허안 조건	CEPA에 따른 홍콩의 중국시장진입 조건
-미양허 대상이나 외자 전시컨벤션 회사의 중국 내 독자, 합자(작) 기업 설립 및 아래 서비스 제공을 허용함 1.중국 내 전시 및 컨벤션 개최 2.해외 컨벤션	-홍콩 서비스제공자의 광동성.상해시 독자, 합자(작)기업 설립 및 해외전시업무 시범허용*CCPIT(중국국제무역촉진위 비준要) -2008년 1월부터 홍콩 서비스제공자가 국경간 공급(cross-border supply)방식으로 광동성, 상해시 내 전시회 개최 허용 *중국 상무부 비준要

- 전시컨벤션은 서비스무역협정(GATT/Uruguay Round Service Trade) 142개 서비스 업종에 미포함 되어 있으며 중국의 WTO 가입 과정에서 중국은 물론 관계국들도 양허 또는 요구하지 않았음

- . 이와 상관없이 중국은 외국인투자 전시컨벤션 회사에 대해 독자는 불허하되 합자를 허용(지분을 제한 없어 지배 지분 가능)하며 합자기업에 내국민대우를 부여함
- 중-홍콩 CEPA는 홍콩 서비스제공자의 광동성 및 상해시 내 독자 및 합자(작)기업의 설립 및 해외전시사업 수행을 시범적으로 허용함
- . 2008년 1월부터는 국경 간 공급 방식에 따른 광동성 및 상해시 내 전시회 개최도 허용함

○ 은행(Banking Services)

[표8] 중-홍콩 CEPA와 중국 WTO 양허안 비교 : 은행 서비스

WTO 양허안 조건	CEPA에 따른 홍콩의 중국시장진입 조건
-자산총액 200억 달러 이상 외자은행에 한해 중국 내 분행(分行) 개설 허용	-자산총액 60억 달러 이상 홍콩등록은행에 대해 중국 내 분행(分行)설치 허용 -2008년 1월부터 홍콩 내 영업경험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
	-2008년 1월부터 홍콩 은행의 중국 은행 지분참여 시 최저자산 요구액을 1백억 달러에서 60억 달러로 인하
-외자은행의 분행(分行) 개설 도시에 지행(支行) 설치 허용	-합자은행 설립 전 대표사무소 설치규정 폐지

- 국경 간 공급, 기업설립(지역제한 및 고객제한) 등은 동일하나 영업허가 조건에 차이가 있음
- . WTO 양허안에서는 자산총액 200억 달러 이상 외자은행에 한해 중국 내 분행(分行) 개설을 허용하나 중-홍콩 CEPA는 홍콩에 대해 자산총액 60억 달러 이상으로 완화함

- 중-홍콩 CEPA는 홍콩 은행의 중국 은행 지분참여도 조건부 허용하고 있음

○ 증권 및 선물(Securities, Futures and Fund Management)

- 증권투자 펀드관리를 위한 합자기업 설립, 합자 증권회사의 중국 증개 회사 미경유 A주, B주, H주, 공사채 거래 허용 등에 관한 규정은 WTO 가입 양허안과 중-홍콩 CEPA 조항이 동일하나 CEPA에 따른 對홍콩 추가 개방분야는 아래와 같음

- 홍콩교역결산소(香港交易及結算所) 베이징사무소 설치 허용;
- 홍콩 전문 인력의 중국 증권, 선물업 자격요건 간소화;
- 중국증권, 선물회사 홍콩지사 설치허용 등 홍콩진출 장려.

○ 위안화 영업(Renminbi Business)

- 홍콩 수입상의 대중국 직접 수입대금 위안화 결제, 국가개발은행 등 중국 금융기관의 홍콩 내 위안화 금융채권 시범발행 허용 등 위안화 영업에 관한 사항은 중국의 대외금융센터로서의 홍콩이 현실적으로 특혜를 누리는 분야임

○ 보험(Insurance Services)

- 보험 서비스는 WTO 양허안의 연차 개방일정(시장접근 등)에 따라 WTO 양허안과 중-홍콩 CEPA 조항 간 큰 차이는 없으나 보험계리인 영업자격 취득 등에서 CEPA가 추가 개방됨

[표9] 중-홍콩 CEPA와 중국 WTO 양허안 비교 : 보험 서비스

WTO 양허안 조건	CEPA에 따른 홍콩의 중국시장진입 조건
-외자보험회사의 중국 시장 진입조건 : 1.자산총액 50억 달러 이상; 2.영업기간 30년 이상; 3.중국내 사무소 설치 2년 이상 경과.	-홍콩보험회사가 구조조정 및 전략적 합병을 통해 아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중국 보험시장 진출 허용 : 1.총자산 50억 달러 이상; 2.홍콩보험회사 1개 사 이상의 영업경험 30년 이상; 3.홍콩보험회사 1개 사 이상의 중국 내 사무소 설치 2년 이상 경과. -2008년 1월부터 홍콩보험대리회사의 중국 내 독자기업 설립 허용
-중국 보험계리인 자격 취득 후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 기준을 득해야 영업 가능	-중국 보험계리인(actuary) 자격 취득 후 영업가능(사전 비준 불요) -홍콩 내 중국보험중개자격고시 시범시행

○ 여행(Tourism and Travel-Related Services)

- WTO 양허안(여행)에 따르면 국경 간 공급과 해외소비는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 모두 제한사항이 아니며(no restriction) 상업적 주재의 조건을 연차적으로 완화함
- . 2007년 말 이후 외국인독자 여행사 설립이 가능하며 상업적 주재의 지역제한이 폐지됨
- CEPA는 홍콩기업에 대해 추가로 매출액 제한규정을 크게 완화함
- . 2008년 현재 독자 및 합자(작) 여행사의 매출액규정이 각각 1,500만 달러와 800만 달러 수준으로 낮음

- 또한 광둥성 소재 홍콩 독자 및 합자 여행사에 대해 광둥성 주민의 홍콩, 마카오 단체여행 업무를 허용하고 광서, 호남, 해남, 복건 등지 소재 홍콩 여행사에 대해 소재지 주민의 홍콩, 마카오 단체여행업무도 허용함

[표10] 중-홍콩 CEPA와 중국 WTO 양허안 비교 : 여행 서비스

WTO 양허안 조건	CEPA에 따른 홍콩의 중국시장진입 조건
-합자여행사 설립 허용 (외국 측 전세계 매출액 4천만 달러 초과要) -2007년 외국인독자여행사 설립 허용 및 지역제한 폐지	-홍콩여행사 중국진입시 매출액규정 완화 (독자여행사 : 2,500만 달러, 합자여행사의 홍콩 측 : 1,200만 달러) -상기 규정을 2008년 1월부터 각각 1,500만 달러(독자), 800만 달러(합자)로 인하
	-광둥성 소재 홍콩 독자 및 합자 여행사에 대해 광둥성 주민의 홍콩, 마카오 단체여행업무 허용 -2008년 1월부터 광서, 호남, 해남, 복건, 강서, 운남, 귀주, 사천 소재 홍콩 독자 및 합자 여행사에 대해 소재지 주민의 홍콩, 마카오 단체여행업무 허용

○ 시청각(Audiovisual Services)

- 시청각 분야는 국별 지재권 보호여건의 차이 및 정치적 요인에 따라 국제적으로 서비스무역 개방에서 예외조항으로 두는 경우가 많으며 중국은 현재 중외합작 배급사 설립을 허용함(외국 측 지분을 49% 이하 및 합작기간 15년 이내 요구)
- 시청각 서비스에서 WTO와 CEPA가 실질적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규정은 TV프로그램 관련 사항임

- 합작(공동)제작한 TV프로그램(드라마)의 심의권, 방영시간 등에서 홍콩기업들이 CEPA로 인한 추가 혜택을 받고 있음

[표11] 중-홍콩 CEPA와 중국 WTO 양허안 비교 : 시청각 서비스

WTO 양허안 조건	CEPA에 따른 홍콩의 중국시장진입 조건
-國家廣播電影電視總局가 중외합작 촬영한 중국TV 프로그램 완성물 심의	-홍콩 출연진과 제작진이 참여한 중국산 TV 드라마 완성물의 심의는 성(省)급 방송TV행정부서가 담당
-소수의 심의필 수입 TV제작물과 공동 제작물에 한해 황금시간대(오후 7~10시) TV방영 허용	-중-홍콩 공동제작 TV물의 방송과 배급은 중국 TV물과 동일하게 간주 -공동제작 TV는 출연진과 스태프의 3분의 1이상이 중국인이어야 하며 중국기업은 제작사 지분의 51% 이상 소유
-공동제작 TV 드라마는 시리즈당 30편미만으로 제한	-중-홍콩 공동제작 TV 드라마의 시리즈당 편수는 중국 자체제작 TV 드라마 기준과 동일
-공동제작 TV 드라마의 시놉시스는 편당 한자 5,000자 이상	-2008년 1월부터 중-홍콩 공동제작 TV 드라마의 시놉시스는 편당 한자 1,500자 이상

○ 문화(Cultural Services)

- 공연에이전트를 포함한 문화 서비스의 경우 WTO 가입 시에는 미양허 분야였으나 CEPA로 인해 홍콩기업들의 중국시장 진출 범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평가됨

[표12] 중-홍콩 CEPA와 중국 WTO 양허안 비교 : 문화 서비스

WTO 양허안 조건	CEPA에 따른 홍콩의 중국시장진입 조건
-미양허	-홍콩회사의 중국 내 독자,합자(작) 공연장, 갤러리, 화방, 예술품전시센터 허용, 중국내 합자(작) 공연에이전트 허용 -2008년 1월부터 홍콩 서비스제공자의 중국내 독자 공연에이전트 허용
	-홍콩공연에이전트의 중국 내 지점 허용 -2008년 1월부터 홍콩공연에이전트가 광둥성,상해시 비준을 득한 후 국경 간 공급(cross-border supply) 방식으로 해 지역에서 주관하는 상업성 공연활동 허용 *중국 문화부의 사전승인 필수

○ 인력중개(Job Intermediary Services)

[표13] 중-홍콩 CEPA와 중국 WTO 양허안 비교 : 인력중개 서비스

WTO 양허안 조건	CEPA에 따른 홍콩의 중국시장진입 조건
-외자 소수지분 합자허용(25%이상 49%이하) -최저납입자본금 30만 달러	-홍콩 서비스제공자에 대해 70% 이하 범위에서 다수 지분 허용 후 2008년 1월부터 독자 인력중개소 설립 허용 -최저납입자본금 12.5만 달러

- 인력중개소는 상업적 주재의 지분비율과 납입자본금 요구조건에서 차이가 있음

. WTO 양허안은 외국 측 소수 지분의 합자기업만을 허용하나 홍콩 서비스제공자들은 CEPA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독자기업 설립이 가능해졌음(납입자본금은 CEPA가 WTO의 절반이하 수준임)

○ 항공운송판매대리(Air Transport Sales Agency Services)

[표14] 중-홍콩 CEPA와 중국 WTO 양허안 비교 : 항공운송대리서비스

WTO 양허안 조건	CEPA에 따른 홍콩의 중국시장진입 조건
-외국 측 소수 지분 합 자회사의 항공운송 관 련 서비스 허용	-홍콩 서비스제공자의 독자기업 허용 (납입자본금 규정은 중국기업과 동일) -2008년 1월부터 독자, 합자(작)기업 설립 신청 시 중국항공운수협회의 1차 심사 면제
	-2008년 1월부터 중국 CRS(컴퓨터예약시 스템) 서비스제공자와의 합자회사 설립 허용(단 중국 측 지배 지분 요구)

- 항공운송판매대리 서비스의 경우(상업적 주재), WTO가 외국 측 소수 지분의 합자회사 설립만을 허용하는데 반해 CEPA는 홍콩 서비스제공자의 독자기업 설립을 허용하며 납입자본금 규정은 내국민 대우를 부여함

○ 육상운송(Road Transport Services)

[표15] 중-홍콩 CEPA와 중국 WTO 양허안 비교 : 육상운송 서비스

WTO 양허안 조건	CEPA에 따른 홍콩의 중국시장진입 조건
-WTO 가입 1년 내 외 국 측 다수 지분의 합 자기업 허용 -가입 3년 내 외국 측 독자기업 허용	-독자기업 육상화물운송기업 설립 허용 -홍콩-중국 논스톱 육상화물운송서비스 허용 -서부지역 독자 육상여객화물운송서비스 허용
	-중국 시급(市級) 도시에 육상여객운송 독자기업 설립 허용

- 양자 모두 독자기업 설립을 허용하나 홍콩 기업들은 CEPA에 따라 이른바 '直通車'라고 하는 홍콩-중국 간 논스톱 육상화물운송서비스 분야에서 유리함

○ 해상운송(Maritime Transport Services)

[표16] 중-홍콩 CEPA와 중국 WTO 양허안 비교 : 해상운송 서비스

WTO 양허안 조건	CEPA에 따른 홍콩의 중국시장진입 조건
-합자기업 외자 지분을 49%이하로 제한	-중국 내 독자기업 설립 허용(범위 : 국제선박관리, 컨테이너 장치장, 퇴적장, 비선박 운송, 화물적재하역, 선박유지보수, 홍콩-중국 간 선박예인) -홍콩 토잉 서비스(towing service) 제공자에 대해서는 '선박총톤수의 50% 이상 홍콩 등록'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중국 내 독자기업 설립 허용(국제해운 컨테이너 리스, 매매 및 부속품 무역업무 허용) -중국 내 독자기업 설립 후 홍콩등록 선박에 대한 선박검사 업무 허용
	-2008년 1월부터 제3자 국제선박대리 합자기업 설립 허용(홍콩 측 지분을 51% 이하)

- 해상운송 서비스는 WTO 양허안에서 외자 지분을 49% 이하의 합자기업 설립만을 허용하나 홍콩기업들은 CEPA에 따라 상업적 주재 영역에서 독자기업 설립 허용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음

○ 유통(Distribution Services)

[표17] 중-홍콩 CEPA와 중국 WTO 양허안 비교 : 유통 서비스

WTO 양허안 조건	CEPA에 따른 홍콩의 중국시장진입 조건
-2006년 12월 11일 이전까지 외자도매기업의 화학비료, 완성유, 원유 취급 불허	-상품중개, 도매 및 대외무역 등 독자기업 설립 허용 -상품중개, 도매서비스의 독자, 합자(작)기업 설립요건 완화(매출액, 자산, 납입자본금, 영업실적 등 제한규정 완화) -위탁판매, 도매서비스의 지역제한 철폐
-2006년 12월 11일 이전까지 외자소매기업의 화학비료 취급불허 -중국 내 30개 이상 점포를 가진 단일 외자기업의 외국 측 지분을 49% 이하로 제한	-소매서비스의 독자, 합자(작)기업 설립요건 완화(자산, 납입자본금 등 완화) -2008년 1월부터 중국 내 30개 이상 점포를 가진 도서, 신문, 잡지, 자동차, 약품, 농약, 제초필름, 화학비료, 곡물, 식물유, 식용설탕, 면화 판매 홍콩 서비스제공자의 지배 지분 허용(홍콩 측 지분을 51% 이하에서 65% 이하로 상향 허용)

- 도소매 서비스의 전반적인 개방범위는 유사하나 매출액, 납입자본금, 영업실적 등 상업적 주재 관련 제한조치 측면에서 CEPA가 완화 상당 폭 완화돼 있음

○ 개체공상호(Individually Owned Stores; 자영업)

- 개체공상호는 WTO 가입 시 중국이 미양허했고 관련국들의 개방 요구도 없었던 분야임
- 중-홍콩 CEPA에서는 소매, 요식, 이미용 등 총 21개 세부 업종에서 홍콩인들의 중국 내 자영업 경영에 대해 외자 심사절차를 면제

[표18] 중-홍콩 CEPA와 중국 WTO 양허안 비교 : 개체공상호 서비스

WTO 양허안 조건	CEPA에 따른 홍콩의 중국시장진입 조건
-WTO 가입 시 미양허	-홍콩 영주권자인 중국 국민의 아래 서비스업종의 개체공상호에 대해서는 외자 심사절차를 면제함: (1)소매; (2)요식; (3)이발; (4)미용보건; (5)목욕; (6)가전 및 기타 일용품 수리; (7)화물 및 기술 수출입; (8)촬영 및 인화, 확대; (9)세탁 및 염색; (10)자동차, 오토바이 유지보수; (11)종식업; (12)축산업; (13)양식어비 (14)컴퓨터 수리; (15)기술교류촉진업 *개체공상호의 종업원 수는 8명 이하 -2008년 1월부터 아래 서비스업종으로 확대: (1)컴퓨터 서비스; (2)소프트웨어 서비스; (3)육상운송화물 관련 서비스; (4)기타 운송서비스(국제 화물대리 및 특송은 제외); (5)창고업; (6)상업 활동성 통번역 서비스

○ 부가통신(Telecommunication Services)

- WTO 양허안은 국내 및 국제통신 위주의 기초통신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외국 측에 대해 지분을 49% 범위 이내의 합자기업 설립이 허용되며 진출 가능 지역은 2007년 말부터 전역으로 확대됨

- CEPA는 기존 WTO 양허안 외에 홍콩 기업에 대해 지역제한 없이 인터넷 데이터센터, 콜센터, 인터넷 액세스, 콘텐츠 서비스 등의 부가통신 시장접근에 혜택을 줌

[표19] 중-홍콩 CEPA와 중국 WTO 양허안 비교 : 부가통신 서비스

WTO 양허안 조건	CEPA에 따른 홍콩의 중국시장진입 조건
-지분율 49%내 소수지 분 합자기업 설립허용 -진출허용 지역은 2006 년말 까지 上海, 廣州, 北京, 成都, 重慶, 大 連, 福州, 杭州, 南京, 寧波, 青島, 沈陽, 厦 門, 西安, 太原, 武漢 이었으나 2007년 말 부터 지역제한 폐지	-5개 부가통신업무 합자기업 설립허용(지 역제한 없으며 지분율 50%까지 허용): (1)internet data centre services; (2)store and forward services; (3)call centre services; (4)internet access services; (5)content service.
	-2008년 1월부터 홍콩 서비스제공자는 중 국에 합자기업을 설립, 《전신업무분류목 록》의 IP기반 VPN(가상사설망) 서비스 제공 가능(지분율 50%이하, 지역제한無)

○ 기타 : CEPAV에서 처음 개방된 서비스업

- 양로 : 홍콩 서비스제공자의 광동성 내 비정부 민간기관 형식의 양로 서비스기구 설치 허용
 - 공공사업 : 홍콩 서비스제공자의 중국 중등(medium-sized) 도시 가스, 난방, 상하수관 건설 및 경영(독자) 허용
 - 환경 : 독자 허용(중국의 WTO 양허안은 합자투자만을 허용)
 - 부동산 : 독자 허용(상동) *WTO 양허안에서는 수수료와 계약을 기초로 한 부동산 서비스업은 합자에 한해 허용(외국 측 다수 지분 가능)
 - 건축물청소 : 독자 허용(중국의 WTO 양허안은 합자만 허용)
 -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 독자허용(상동)
- * 이 밖에 WTO 양허안에서는 합자 형식만을 허용하는 촬영서비스, 통번역서비스 등은 CEPA 조건에서는 독자경영이 가능함

라. 2009년 1월부 주요 신규 조치

[표20] 중국의 대홍콩 서비스업 개방 조치(2009년 1월 1일부 신규)

구분	업종	내 용
금융	은행	중국에 등록된 홍콩 법인은행은 홍콩에 데이터센터 설립을 허가함. (반드시 중국에 설립할 필요 없어짐)
전문 서비스	회계	홍콩회계사조합 회원이 중국의 '중국세무' 및 '중국경제법' 두 과목의 전문회계시험을 통과하면 중국에서 개업자격 취득 허용(수혜 회계사 약 2만8000명 예상)
	의료 및 치과	현직 洋醫 및 치과의사는 독자적으로 개업이 가능하며, 최소투자액 제한 없음. 홍콩의 전문의들은 중국에서 개업신청이 가능하며, 3년간 시험 없이 개업 가능
	건축	홍콩과 중국기업이 합자형식으로 건설회사 설립 시 중국 공동경영자의 자본비율 제한 없음
여행 및 전시 컨벤션	여행	홍콩인이 중국가이드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정식 가이드 자격증을 발급 非광둥성 호적의 주민이 深圳에 1년이상 체류했을 경우 단체 패키지를 통해 홍콩 디즈니 방문이 가능함. 외국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심천에서 시행하던 144시간 편의비자 정책을 광둥성 전역으로 확대 시행
	전시 컨벤션	北京, 天津, 重慶, 浙江 소재 홍콩기업은 독자, 합자를 통해 해외전시업무 운영 가능
기타	개체 공상호	외자비준 없이 홍콩기업은 개인 상공업을 개설할 수 있고, 중국 각 省市에서 건축물청소 서비스, 광고제작 등의 활동이 가능 광둥성 내에서는 무역관리, 대리업, 건물 및 토지 임대업도 포함
	채광	홍콩기업은 중국기업과 합작형식을 통해 중국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 채석 사업 참여 가능
	과학기술. 컨설팅	홍콩기업은 독자 혹은 중국기업과의 합작형식을 통해 중국에서 망간 탐색 사업 추진 가능
	양로.장애인 서비스	광둥성에서 홍콩기업 독자 장애인복지시설 개설 가능 (민영 및 비법인 가능)
	인쇄	홍콩기업이 중국에 포장·인테리어·인쇄물 관련 업체 설립 시 중국기업과 동일한 최소 자본기준을 적용

3. 홍콩에 미치는 영향

가. 경제적 효과

□ 3년간 51억 홍콩달러 투자 효과

- 홍콩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¹⁴⁾ 홍콩은 CEPA 효과로 발효 원년인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홍콩 내에서만 총 51억 홍콩달러의 서비스업 투자가 이루어짐
- 이는 같은 기간 홍콩방문 중국인의 소비 증가(227억 HK\$), 대중국 수출 시 영세율 혜택 상품 규모(100억 HK\$), 신규 일자리 수 증가(3만 6,000개) 등과 상승 작용을 해 홍콩의 경제성장률을 2003년 2분기 마이너스 0.7%에서 2004년 8.6%, 2005년 7.5%, 2006년 6.9%로 반전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홍콩정부는 평가함

□ 대중국 서비스업 투자 확대

- CEPA 발효 후 시장 조기진입을 겨냥한 홍콩 서비스업계의 중국 투자가 활발해짐
- 홍콩 서비스기업들은 2004년~2007년 5월 중국 광둥성에만 6,076건, 120억 달러(계약기준)를 투자해 같은 기간 광둥성 전체 홍콩 자본 유치 실적의 각각 34%와 29%를 차지함
- 이로 인한 광둥성 내 일자리 증가분이 1만 6,000개에 달함

14) 홍콩공업무역국(香港工業貿易署) 조이스 탐(Joyce Tam) 부국장이 2007년 12월 13일 홍콩총상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Update on CEPA" 제하의 보고서

□ 외자유지 촉진제로 작용

- CEPA를 활용해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외국기업들의 대홍콩 투자가 증가한 효과를 보고 있음
- 홍콩공업무역국이 2007년 1분기 중 홍콩에 설립된 147개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3%가 “CEPA 활용”을 대홍콩 투자 결정요인의 하나로 꼽았음
- 외국기업들은 홍콩 서비스 제공자 자격 획득 및 홍콩기업과의 중국시장 공동 진출을 모색하고 있음

나. 홍콩 서비스업의 중국진출 특성

□ 업종 특성

- CEPA 발효 후 홍콩 업계의 중국 서비스업 진출은 운송·물류, 유동, 광고, 건축 및 관련 서비스 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홍콩 기업들이 이 분야에 강세를 보이고 있음
- 2004년~2007년 4월말 까지 홍콩정부가 발행한 "홍콩 서비스 제공자 증명서(이하 증명서)" 1,753건 가운데 운송·물류업과 유통업이 각각 1,032건(58.9%)과 337건(19.2%)이며 광고, 건축 및 관련 서비스가 각각 79건과 73건을 기록함

□ 지역분포 특성

- 홍콩공업무역국이 2006년 증명서 취득 기업 9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80% 이상이 CEPA를 활용해 중국에 진출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성공적인 것으로 분석됨

- CEPA를 활용해 중국에 진출한 홍콩 서비스업 기업들의 지역분포는 광둥성(44.4%)과 상해(43.8%)가 가장 많음

- 광둥성 내에서는 심천과 광주가 각각 19.8%와 18.7%를 차지함

□ 진출단계 특성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광둥성 분회(2007)는 CEPA 초기 '시장접근(Market access)'에 치중하던 홍콩 기업들이 최근 '영업환경 평가 및 확대'에 관심을 갖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분석함

- 법률 서비스의 경우 홍콩 업계의 관심사가 초기의 '시장진입 문턱'에서 현재 '중국 내 영업부진의 원인 분석'으로 모아지고 있음

- 중국진출이 가장 활발한 운송물류업은 대부분 기업들이 초기의 '관련 정책 및 수속절차 파악' 단계에서 벗어나 '영업 확대'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

□ 진출방식 특성

- CEPA 발효 후 모든 홍콩 서비스 업계가 CEPA의 틀과 구조로 중국에 진출하는 것은 아니며 중국 내 지인명의 활용, 각종 형식의 합영(合營) 등 비(非)CEPA 방식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 CEPA의 문제점

□ 개방수준 미흡과 복잡한 수속절차

- CEPA는 WTO 양허안보다 진일보한 자유무역협정이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서비스 업종에서 중국의 개방수준이 미흡함

- 법률 서비스는 현행 CEPA 하에서도 홍콩 로펌의 중국 대표사무소는 중국인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현지 업무 처리에 곤란을 겪고 있음
- CCPIT 광둥성분회에 따르면 물류업의 경우 이미 상당수 홍콩기업들이 중국에 트레이일러 회사를 세웠지만 국경 간 공급 관련 제도의 미비로 이들 기업의 중국-홍콩 간 영업이 원활하지 않음
- 중국 상무부가 CEPA 서비스업 심사허가권을 상당 부분 각 지방정부에 이양됐음에도 지방정부에서의 수속절차가 복잡해 큰 문은 열렸지만 수많은 작은 문들이 닫혀있는 상황이 빈번함
- 홍콩공업무역국은 중국 지방정부의 심사허가 절차 과정에서 시한 초과, 투명성 부족 등의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보고 있음

□ 국내법과의 충돌

- CEPA 조항은 주로 시장접근의 측면에서 마련됐기 때문에 시장진입 문턱 축소로 인해 초기 진출단계는 용이하지만 이후 중국 정부의 관련 정책과 국내법의 제한으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음
- 물류업의 경우 홍콩 기업들이 CEPA에 따라 진출한다고 해도 경영관리, 검사검역, 법률책임 등에 관한 중국 국내 법률법규 만도 11가지에 달하며 소관부처도 상무부, 교통부, 철도부, 국가민항총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으로 분산돼 있음(홍콩정부 광둥성 주재 사무소 자료)
- 건축시공의 경우 홍콩기업이 중외합영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차별대우를 받지 않지만 "외국인투자 건축업관리기업규정"에 따라 100% 중국자금이 투입된 프로젝트는 도급할 수 없음

□ 경영여건 미비

- 홍콩과 중국의 문화적, 제도적 차이점으로 인해 CEPA의 시장개방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 법률 서비스에서 홍콩 로펌은 전문분야만을 수입하지만 중국에서는 동종 업계의 경쟁 격화로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부분까지 무리하게 수주 또는 참여하려는 경우가 많음
- 건축시공의 경우 홍콩은 하나의 주사업자와 다수의 하도급업자로 구성되지만 이 같은 분업 시스템이 미비한 중국에서는 입찰 등의 경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개별 업체에게 다수의 면허증과 자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 이 밖에 중국 내 서비스업 경영에 필요한 고급 전문 인력 부족, 홍콩 서비스업계 인력의 중국자격 취득 요구 등도 애로 사항임

4. 한-중 FTA에의 시사점

□ 중국의 서비스업 개방효과 면밀 검토

- 중-홍콩 CEPA는 중국 중앙정부와 홍콩특구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며 CEPA 초기에 안민(安民) 전 상무부 부부장(차관)은 “중-아세안 FTA보다 유리하게, WTO 보다 빨리”라는 원칙을 내세웠으나 2006년 12월 중국의 WTO 가입 과도기 경과 후 홍콩에서는 CEPA 효과를 의문시하는 시각이 있음
- 2004년~2007년 4월말 까지 홍콩정부가 발행한 "홍콩 서비스 제공자 증명서(이하 증명서)" 1,753건을 연도별로 구분하면 CEPA 발효 원년인 2004년에는 한해 1,196건이었으나 이후 359건(2005), 142건(2006), 56건(2007.1~4)등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음

- 또 다른 차원에서 CEPA 발효 후 2007년 3월까지 광주(廣州)시가 홍콩업체로부터 접수한 CEPA 관련 신청 건수가 79건이며 이 중 75건을 승인한 바 있음(투자총액 1.63억 달러, 홍콩 측 투자계약액 1.08억 달러)
- 그러나 같은 시기 홍콩이 집계한 對광주 서비스업 직접투자 건수는 589건에 달함(홍콩 측 투자계약액 11.74억 달러)
- 이 같은 차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홍콩 기업들 가운데 비(非) CEPA 방식의 투자가 많아지고 있음을 의미함
- 향후 한-중 FTA를 추진할 경우 중국의 서비스업 시장개방 자체에 치중하기 보다는 개방된 시장 환경을 한국기업들이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

□ 중국의 시장장벽

- 일반적으로 해외진출의 난이도 측면에서 서비스업이 제조업 보다 훨씬 복잡한 측면이 있고 중국의 경우 이 같은 특성이 보다 강하게 나타남
- 중국은 CEPA를 통해 홍콩에게 서비스업을 대폭 개방했지만 국내 시장의 수많은 장벽을 제거한 것은 아니며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이른바 ‘잠규칙(潛規則 latent practice)’이 곳곳에 숨어있음
- 행정 권력의 직간접 작용으로 시장진입장벽을 형성하는 행정성 독점장벽, 각 지방정부 차원의 지방보호주의 장벽, 국영기업의 독점장벽, 중국 국내 시장보호를 위한 각종 비무역 장벽 등이 사라지지 않는 한 홍콩 기업들은 시장진입 이후 새로운 난관에 봉착하게 됨
- 이와 같은 이른바 ‘대외 개방-대내 폐쇄’ 구조는 향후 한-중 관계에서 보다 심각하게 부각될 수 있음

- 향후 한-중 FTA를 체결한다면 본 협정 못지않게 중국 국내시장의 장벽요인을 함께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함

□ 한-중 서비스업 발전수준 격차 고려

- 홍콩의 서비스업 발전은 홍콩의 시장경제제도 및 법치사회의 성숙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 여전히 시장경제 초기 단계이어서 제도가 미비하고 서비스산업의 환경조건이 낙후돼 있음
- 중국의 시장조건과 제도적 환경이 미성숙한 상황에서 홍콩 서비스업계가 대거 중국진출에 나선다면 각종 제약 및 장애요인이 수반됨
- 이 같은 문제점은 한-중 FTA 체결 시 양국 간에도 표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중국과 FTA를 체결한다면 중국 측의 서비스 시장 개방 폭 확대에만 치중하기 보다는 양국 간 산업 및 제도적 발전의 격차를 감안한 전략적 고려가 선행돼야 할 것임

□ 중소기업 역량 고려

- 홍콩무역발전국이 2006년 4월 홍콩 서비스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50%의 응답업체가 “회사의 조건 한계” 및 “중국에 대한 인식 부족”을 중국시장 미진출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음
-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달리 세부 업종별로 시장개방 여부와는 상관없이 납입자본금 요건이 높게 책정된 경우가 많아 투자기업에게 부담이 되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라면 더욱 그러함

- 건축 서비스의 경우 홍콩은 건축사무소별로 특정 전문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나 중국에서는 일괄 서비스형 종합건축을 요구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한-중 FTA 추진 시 중소 서비스업계가 현실적으로 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납입자본금 규정과 중국의 산업 특성에 특히 유의해 협상에 임해야 함

□ 핵심 공략지역 선정

- 한-중 FTA는 중앙정부 간 협정이므로 효력 발생 후 우리 기업과 중국 지방정부 차원의 문제 발생 소지가 많음
- 이에 따라 우리 서비스업계의 진출이 유망한 중국 연해의 특정지역을 '(가칭)한-중 FTA 서비스업 협력 시험지구'로 설정하는 방안을 협상, 관철한다면 핵심 거점지역 공략 효과와 초기 진출 시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임

□ 중-홍콩 CEPA 추가 연구 필요

- 우리 기업의 대중국 직수출 증가율이 감소할 우려가 있고 중국 내 제조업 환경도 예전만 못한 상황에서 향후 한-중 FTA 추진 시 제조업 분야 못지않게 서비스 분야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이 보고서는 중-홍콩 CEPA 자체에 대한 조사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홍콩 CEPA 체결 효과가 한-중 FTA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시험적 차원의 조사(pilot study)임
- 중-홍콩 CEPA의 서비스 업종별 효과 및 시사점에 대한 본격적이고도 심층적인 추가 조사를 할 경우 한-중 FTA 협상전략 수립에 유용할 것임.<끝>



작성자

중국팀 박한진 차장



Global Business Report 08-063

중-홍콩 CEPA 5주년 평가 및 한-중 FTA에의 시사점

발행인 | 조 환 익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08년 12월 30일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 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08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